

# 서울특별시 공무원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404
- 제 안 자 : 장인홍 의원 외 12명
- 제 안 일 : 2020년 4월 2일
- 회 부 일 : 2020년 4월 8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원외여행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원외여행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외여행계획서 제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 나. 공무원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 4. 13. ~ 4. 21.)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를 공개하도록 하고(안제4조의2),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심사기준을 별표에 신설하며(안제5조제2), 심사위원중 외부위원 비중(내부4명⇒1명, 외부3명⇒6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제6조).

※ 동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가 제291회 임시회를 통과하여 개정('20.3.26)된 바 있음.

- 2019년 서울시 국외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장인원은 총872명으로  
 ▶국제행사·회의 ▶업무협의·수행 ▶선진조사·교육·연수 ▶외부주관 선진조사·교육·연수의 목적으로 출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2019년 서울시 국외출장 현황〉

출장인원	출 장 목 적			
	국제행사·회의	업무협의·수행	선진조사·교육·연수	외부 주관 선진조사·교육·연수
872명	338(38.8%)	238(27.3%)	215(24.6%)	81(9.3%)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함은 물론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무 국외여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 신설(안 제4조의2)

- 안 제4조의2 신설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심사대상인 여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 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유관기관(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의 공무국외심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u>제4조의2(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는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u></p> <p><u>③ 시장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p>

※ 현재, 서울시 유관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를 개정(19.3.28)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를 개정(20.3.26)한바 있음.

〈서울시 관련기관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조례 현황〉

조례명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2012.12.30.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li> <li>※ 목적규정 등 총3장, 17개 조문으로 구성</li> </ul>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2019.8.1.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li> <li>※ 목적규정 등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li> </ul>

- 개정안과 같이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여 공무국외활동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할 경우 서울시 공무국외 여행 투명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의 사전간담회 개최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준용(제10조)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회는 국외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운영('19년 9회) 하였음.
- 다만, 서울시의 다양한 목적의 공무국외여행(국제행사·회의, 업무협의·수행, 선진조사·교육·연수, 외부 주관 선진조사·교육·연수) 전체에 대해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국제행사(회의, 세미나, 포럼)참석 및 업무협의 등 비교적 명확한 공적목적 가진 출장은 예외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의2 제3항은 시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심사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사전·사후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정보접근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시스템에 등록·열람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중복규정 여부와 조문의 통합 및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14조(사후관리)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규정 강화(안 제5조제2항)

- 안 제5조제2항은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 기준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기준을 마련하여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생략) ② <u>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여행의 목적과 필요성</u> 2. <u>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u> 3. <u>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u> 4. <u>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합성</u> 5. <u>여행경비의 명확성</u>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u>	
	항목	심사기준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 방문하는가?

**6.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적절성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 있는지?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에서는 ①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②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③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④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합성 ⑤ 여행경비의 명확성 ⑥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는 바,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공무국외여행 참가자·기간·방문기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기본적인 사항 이외의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주관 부서의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국외심사 활동에 관한 충분한 사전 준비나 목적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국에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를 통해 기존 심사 기준을 매달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안내기준에 맞춰 작성한 심사자료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4) 위원회 구성 방식 등 변경(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현행과 같이 7명으로 유지하면서 임명직 1명(예산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인력개발과장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u>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u>되, 위원장은 <u>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1. 예산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부서의 장 중 1명</u></p>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은 3명으로 한다.

1. 예산부서의 장 및 인력개발 부서의 장,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부서의 장

2.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 ⑦ (생략)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 사회단체 등의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관련 조례(「서울특별시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참고한 것인 바, 내부 관련자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음.

- 다만, 서울시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인원을 6명으로 할 경우, 내부위원의 축소에 따른 역할부재와 심사기능 저하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구 분	심 사 기 능(출장방침 수립 시 협조결재 이행)
예산담당관 (여비기준 운영)	실국 국외여비 편성 및 출장별 여비 산출의 적정성 심사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협력)	출장국가 및 도시(자매우호도시 등), 국제협력사업 모니터링 등 심사
인력개발과장 (국외출장 업무 주관)	출장목적·일정·인원 등 내용 전반에 대한 심사

- 행정국에서는 행정안전부(위원 5명중 외부 1명)와 인사혁신처(위원 7명중 외부 1명) 등 중앙부처 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의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17개 광역시도에서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구성인원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전원내부위원구성 : 9개지자체, 내부 및 외부위원 혼합 구성 : 8개지자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참고자료①),
  - 서울시는 유관기관(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에 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안건이 많고, 국제정세 변동 및 회의시기 확정과 지연에 따른 초청장 전달시기의 불투명성 등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하는 출장에 대해서 심사횟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운영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임.

〈2019년 기관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현황 비교〉

구 분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위원 구성	내부 1, 외부 8	내부4 외부 3 (외부 퇴직공무원 1인 포함)	내부 4, 외부 3
개최 횟수	7회 (대면 7회)	52회 (서면 52회)	25회 (대면 10회, 서면 15회)
심사안건 수	12건	130건	357건
심사결과	원안가결 10건(83%) 부결 2건(17%)	원안가결 130건(100%)	원안가결 310건(86%) 수정가결·부결 47건(14%)

-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총장이 심사·허가하여 시행하므로 동 조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에 대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에서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변경(여행⇒출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 공무국외출장 관련 용어 변경 동향

- 중앙부처,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용어 변경 : '16.11월
  - 「공무국외여행규정(인사혁신처)」 폐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에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 변경하여 관련 조문 신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에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시
  -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서울시)」 등에는 “국외여행(출장)” 관련 내용 없음(서울시 공무국외여행 조례로 규정 중)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작성례」 개정 : '19.12월
  - ‘공무국외여행, 국외여행, 여행 등’ → ‘공무국외출장, 국외출장, 출장’으로 변경

-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서울시 공무국외활동시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함께 제출 하도록 하는 강화된 심사기준안은 공무국외활동의 객관성과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와 서울시 유관기관(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과 심사 기준을 일괄하여 동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운영상 저해 요소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 [참고자료]

### 운영현황 : 총 17개 지자체(조례3, 규정14)

연번	지자체	조례(규정)명	조례(규정) 주요내용					비고
			사전간담회 개최	위원구성	위원장	위원장 선임방식	외부위원 임기	
1	서울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미개최	7명 (내부4, 외부3)	행정국장	-	2년	
2	부산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미개최	12명 (내부7, 외부5)	성장 전략국장	조례상 규정	2년	
3	대구	대구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미개최	7명 (내부7)	자치행정 국장	규정 상 규정	-	
4	인천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미개최	5명 (내부5)	국제협력 담당관	규정 상 규정	-	
5	광주	광주광역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미개최	8명 (내부7, 외부1)	기획 조정실장	규정 상 규정	2년	경비지원받는 출장만 외부위원 참여
6	대전	대전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미개최	6명 (내부6)	기획 조정실장	규정 상 규정	-	
7	울산	울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미개최	7명 (내부7)	행정 지원국장	규정 상 규정	-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미개최	13명 (내부 10 외부 3)	기획 조정실장	규정 상 규정	2년	
9	경기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조례	미개최	7명 (내부 4 외부 3)	경제기획관	위원 중 호선	2년	
10	강원	강원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미개최	6명 (내부6)	총무행정관	규정 상 규정	-	
11	충북	충청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미개최	7명 (내부7)	행정국장	규정 상 규정	-	
12	충남	충청남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미개최	9명 (내부9)	경제실장	규정 상 규정	-	
13	전북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미개최	7명 (내부7)	대외협력 국장	규정 상 규정	-	
14	전남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미개최	3급이상출장 7명(내부7)	행정부지사	규정 상 규정	-	
				4급이하출장 7명(내부7)	자치 행정국장			
15	경북	경상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미개최	6명 (내부5, 외부1)	일자리 경제실장	규정 상 규정	-	외부위원 미위촉
16	경남	경상남도 공무국외출장규정	미개최	8명 (내부6, 외부2)	기획 조정실장	규정 상 규정	3년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미개최	8명 (내부7, 외부1)	총무과장	규정 상 규정	-	외부위원 미위촉